

송도역 한신더휴 프레스턴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6. 27.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5.06.27.(금) 공고한(당사 홈페이지, 문화일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청약홈) ‘송도역 한신더휴 프레스턴’ 입주자모집공고 중(51page) 일부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변경 전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변경 후	• 지정된 세대별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1644-557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민 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 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 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 06. 27.(금)	25. 07. 07.(월)	25. 07. 08.(화)	25. 07. 09.(수)	25. 07. 16(수)	25. 07. 18.(금) ~ 25. 07. 23.(수)	25. 07. 29.(화)~ 25. 07. 31.(목)

■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건본주택 관람은 2025.06.27.(금)부터 가능하며,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기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 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방문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고지할 예정임)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을 위한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의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가 고지 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송도역 한신더휴 프레스턴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1644-5575)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 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 06. 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주택(APT, 계약 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 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자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 별 공 급					일 반 공 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 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 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천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천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시 추천)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천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 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 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d-thehue.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 조의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 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미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공급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 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납부 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분양공급계약 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분양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

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1/2순위)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7.(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 07. 07.(월)	25. 07. 08.(화)	25. 07. 09.(수)	25. 07. 16.(수)	25. 07. 18.(금) ~ 25. 07. 23.(수)	25. 07. 29.(화) ~ 25. 07. 31.(목)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현장접수:당사 건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당사 건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 - 1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합니다.(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본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기준일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관련 법령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1년	1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5호, 가목의 1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주택과-1987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652세대 중 일반분양 208세대
(조합411세대 : 54.1997㎡(8세대), 79.8596㎡(188세대), 80.1022㎡(5세대), 98.8455㎡(81세대), 99.7697㎡(28세대), 111.7211㎡(46세대), 112.7632㎡(53세대), 163.8635㎡(2세대) 보류지 79.8596㎡(4세대), 임대 54.1997㎡(29세대)
[특별공급 94세대(기관추천 18세대, 다자녀가구 19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	최하층 우선 배정
				주거 전용	주거공용 소계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49	01	040.6711	40	40.6711㎡	13.5286㎡	54.1997㎡	31.2480㎡	85.4477㎡	21.8560㎡	10	1	-	2	-	1	4	6	-
	02	059.9656A	59A	59.9656㎡	19.8940㎡	79.8596㎡	46.0722㎡	125.9318㎡	32.2033㎡	175	15	17	26	5	17	80	95	16

	03	059.9698B	59B	59.9698㎡	20.1324㎡	80.1022㎡	46.0754㎡	126.1776㎡	32.3012㎡	23	2	2	3	-	3	10	13	1
	합 계									208	18	19	31	5	21	94	114	17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로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홈페이지 등의 주택형은 약식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평형대별로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각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3째자리 또는 4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40	59A	59B	합 계
일반(기관추천)	국가유공자	-	3	1	4
특별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	3
	중소기업 근로자		-	3	-	3
	장애인	인천광역시	1	1	1	3
		서울특별시	-	1	-	1
		경기도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9	1	10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8	1	9
신혼부부 특별공급			2	26	3	3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7	3	21
합 계			4	80	10	9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동/라인	구분(층)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1개월 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5.12.22	2026.05.20	2026.10.20	2027.03.20	2027.08.20	2027.12.20	
40	108동 1,2,3,4호	5~9층	3	118,782,000	211,168,000	329,950,000	10,000,000	2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98,985,000
		10~12층	7	119,862,000	213,088,000	332,950,000	10,000,000	2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99,885,000
59A	101동 1,2,4호 102동 1,2호 103동 1,2,3,4호 104동 1,2,3호 107동 1,2,3,4호	1층	8	176,706,000	314,144,000	490,850,000	10,000,000	3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147,255,000
		2층	16	178,506,000	317,344,000	495,850,000	10,000,000	3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148,755,000
		3층	16	180,306,000	320,544,000	500,850,000	10,000,000	4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150,255,000
		4층	16	181,746,000	323,104,000	504,850,000	10,000,000	4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151,455,000
		5~9층	27	183,546,000	326,304,000	509,850,000	10,000,000	4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152,955,000
		10~19층	58	184,626,000	328,224,000	512,850,000	10,000,000	4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153,855,000

		20~29층	34	185,346,000	329,504,000	514,850,000	10,000,000	4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154,455,000
59B	101동 3호	2층	1	176,742,000	314,208,000	490,950,000	10,000,000	3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147,285,000
		3층	1	178,542,000	317,408,000	495,950,000	10,000,000	3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148,785,000
		4층	1	179,982,000	319,968,000	499,950,000	10,000,000	3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149,985,000
		5~9층	4	181,782,000	323,168,000	504,950,000	10,000,000	4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151,485,000
		10~19층	10	182,862,000	325,088,000	507,950,000	10,000,000	4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152,385,000
		20~29층	6	183,582,000	326,368,000	509,950,000	10,000,000	4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152,985,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라인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로세 포함), 인지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옵션) 품목 미포함 금액으로 계약자가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단,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납금액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10%)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대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 및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5. 03. 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 3 (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에 관한 특례)개정사항

조 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 용	유의 사항
제 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 2항 (혼인 특례)	신혼부부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 3항 (출산 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 특례 또는 출산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 분

내 용

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 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 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의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외 세대원 중복당첨의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각 유형 구분없이 주택형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 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특별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 사항”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 만원</td><td>300 만원</td><td>200 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td><td>400 만원</td><td>600 만원</td><td>300 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td><td>700 만원</td><td>1,000 만원</td><td>400 만원</td></tr> <tr> <td>모든 면적</td><td>1,000 만원</td><td>1,500 만원</td><td>500 만원</td></tr> </tbody>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합니다.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8세대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 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9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경기도)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분을 포함하여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②배점

배점 항목	총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 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합니다.

		5년이상 ~ 10년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1년이상 ~ 5년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공급세대수의 23% 범위 31세대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table><tr><th>단 계</th><th>소득 구분</th><th>내 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합니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td></tr></table>			단 계	소득 구분	내 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합니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단 계	소득 구분	내 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합니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3단계	우선 공급(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4단계	일반 공급(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비 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 06. 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 율	소득 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구 분	금 액	내 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5세대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 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 공급세대수의 9% 범위 21세대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 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table><tr><th>단 계</th><th>소득 구분</th><th colspan="2">내 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 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단 계	소득 구분	내 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우선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 계	소득 구분	내 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우선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비 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tr><td>2025. 06. 27.</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tr></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 06. 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 06. 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tr><th rowspan="2">소득 구분</th><th rowspan="2">비 율</th><th colspan="6">소득 금액</th></tr><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tr><td>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td><td>130%이하</td><td>~9,366,906원</td><td>~11,151,514원</td><td>~11,740,362원</td><td>~12,653,012원</td><td>~13,565,661원</td><td>~14,478,311원</td></tr></table>	소득 구분	비 율	소득 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30%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소득 구분	비 율			소득 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30%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 일반공급		130%초과 160%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 분	금 액	내 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 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 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구 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 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2년 이상	1년 이상	3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 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합니다. 소형·저가 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합니다.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 합니다.

인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단 계	비 율	내 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안내
---	-----------------

■ 일정안내

구 분	청약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특별공급	25. 07. 07.(월)		25. 07. 16.(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25. 07. 08.(화)		
	2순위	25. 07. 09.(수)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또는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16.(수). ~ 2025.07.25.(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이 가능 합니다.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 됩니다.)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 자 - 제공일시 : 2025.07. 1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25. 07. 18.(금) ~ 25. 07. 23.(수) 6일간 (10:00 ~ 16:00)	한신더휴 프레스턴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 (안내받은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당사 홈페이지 (https://www.sd-thehue.com)
예비 당첨자	추후 일정 공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이전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자, 주택소유 등)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 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봅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고 미 소명 시에는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나, 서류 미제출로 인한 미확인의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 수	추가 (해당자)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통서류 (기관추천 및 특별공급 포함)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아파트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인 계약체결 불가 - 반드시 당첨자 본인 계약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존주택처분 서약서	본인	• 특별공급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관련 서약서(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비자발급 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되지 않음.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여부 확인 ※성명, 주민번호 '전체표기'(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체류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초본(상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출산시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당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 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전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팩스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 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노부모 부양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 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일반공급 당첨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홀) 청약홀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 존·비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시 (본인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신분증,도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 27.)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 인터넷 발급용(정부24) 인감증명서는 사용불가 합니다. (주민센터등 관공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구 분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23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본(직인날인) ③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해당직장
	전년도(24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년도(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23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 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①전전년도(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첨부	①세무서
	신규사업자	①[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①국민연금공단

자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사업자등록증 첨부	②세무서
	법인사업자	①전년도(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전년도(24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세무서 ②해당직장/세무서 ③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24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행복복지센터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전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세무서 ②해당직장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 비치) ②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건본주택 ②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②해당직장
자산입증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조건 청약자에 한함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위텍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

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서류제출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직장/세무서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해당직장 ②세무서 ③해당직장/ 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사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②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발급) 및 토지대장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소유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지역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행정복지센터 ③서울특별시이택스 (etax.seoul.go.kr) 또는 (www.wetax.go.kr)
	해당 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행정복지센터 ②해당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용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 07. 29.(화) ~ 2025. 07. 31.(목), 3일간 / 10:00 ~ 17:00	- 송도역 한신더휴 프레스턴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

- ※ 계약기간 공급계약 체결은 당첨자 본인이 지정하여 안내받은 방문일자 및 시간에 필히 방문하셔야 합니다.(당첨자 외 견본주택 입장불가,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1인만 입장)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견본주택 방문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완납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전자인원 인감증명서 불가, 서류접수기간 내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 도장만 지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한기한 내 반드시 제출 (당사견본주택 별도안내 예정)
		○	적격여부 확인 증빙서류	-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통장사본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부동산실거래신고서	-	- 건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 (본인외 모두제3 자)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양식은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계약자	- 발급용도[아파트 계약용],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불가
	○		인감도장	계약자	- 인감도장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위임자, 수임자 모두 확인필요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대리인	- 건본주택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 (건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가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 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 명단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체결조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를 통해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분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 기관	납부 계좌	예 금 주
계약금/중도금/잔금	우리 은행	1005-804-796444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지정된 세대별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단지·동·호수 10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301동 3001호 홍길동 : 3013001홍길동)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금융기관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협의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납입 후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 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열쇠 보출일)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귀책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하여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 년 4 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 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 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 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 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MDF, 방재실 포함), 경비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어린이집), 북클럽(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실외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하자보증책임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9	참고 사항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의 범위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합니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합니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 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일 경우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옵션사항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원, VAT포함]

구분(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40	5,300,000	530,000	4,770,000	
59A, 59B	14,000,000	1,400,000	12,600,000	

■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671001-04-068573	한신공영(주)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부창호	외부창호	기타
기 본 형			22mm 일반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일반 복층유리 + 외부 일반 복층유리)	창호없음	
확 장 형	안 방	40 TYPE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16mm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mm 일반 복층유리)	로이 복층유리 PL단창 (슬라이딩창-22mm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23.76mm 로이 복층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mm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59 TYPE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mm 로이 복층유리, 외부 : 슬라이딩창-22mm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23.76mm 로이 복층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mm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침 실	40 TYPE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16mm 일반 복층유리, 외부 : 22mm 일반 복층유리)	-
		59 TYPE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mm 로이 복층유리, 외부 : 슬라이딩창-22mm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23.76mm 로이 복층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mm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거 실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mm 로이 복층유리, 외부 : 슬라이딩창-22mm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23.76mm 로이 복층유리, 슬라이딩 창호 외측 10.76mm 유리난간)	유리난간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주방/식당, 드레스룸			PL조망형단창 (고정창 : 46.76mm 로이 심중유리)	조망형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다용도실		-	PL조망형단창 (고정창 : 22mm 로이 복층유리)	조망형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료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선택 옵션 (무상 선택 옵션)

타입	설치 항목
59A, 59B	침실1,2 통합형 구조(기본선택 침실1,2 분리형 구조)

■ 추가 선택품목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 시스템에어컨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공급대금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40	옵션 1	거실 + 안방	3,300,000	330,000	2,970,000	LG
	옵션 2	거실+안방+침실1	4,400,000	440,000	3,960,000	
59A	옵션 1	거실 + 안방	3,900,000	390,000	3,510,000	
	옵션 2	거실+안방+침실1+침실2	6,200,000	620,000	5,580,000	
59B	옵션 1	거실 + 안방	4,000,000	400,000	3,600,000	
	옵션 2	거실+안방+침실1+침실2	6,300,000	630,000	5,670,000	

■ 시스템에어컨 금액 납부계좌

금융 기관	계좌 구분	계좌 번호	예 금 주
농 협	시스템에어컨 대금 납부계좌	351-1277-3010-63	송도영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택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의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동일 평형 및 동일 실별, 동일한 위치 이더라도, 엘지, 삼성 등 제조사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배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구성		공급대금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현관	현관중문	59A,B	3연동 자동 중문		2,100,000	210,000	1,890,000	
주방	주방특화	40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상부장 하부조명 + 독립형 후드 + 사각 싱크볼 + 주방상판 콘센트		3,000,000	300,000	2,700,000	
		59A	1(ㄷ자)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상부장 하부조명 + 독립형 후드 + 사각 싱크볼 + 주방상판 콘센트	4,000,000	400,000	3,600,000	
			2(ㄱ자)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상부장 하부조명 + 아일랜드 상부 장식장 + 독립형 후드 + 사각 싱크볼 + 주방상판 콘센트	6,000,000	600,000	5,400,000	
		59B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상부장 하부조명 + 독립형 후드 + 사각 싱크볼 + 주방상판 콘센트		4,100,000	410,000	3,690,000	
거실/주방/복도	에디톤 바닥	40	에디톤 스톤 (마루)		900,000	90,000	810,000	
		59A	에디톤 스톤 (마루)		1,500,000	150,000	1,350,000	
		59B	에디톤 스톤 (마루)		1,200,000	120,000	1,080,000	
	마감특화	40	거실,주방,복도 벽체 시트판넬		750,000	75,000	675,000	
		59A	1 (ㄷ자주방)	웰컴월 타일 + 거실,주방,복도 벽체 시트 판넬	1,700,000	170,000	1,530,000	
			2 (ㄱ자주방)	웰컴월 타일 및 아트월 타일 연장 + 거실,주방,복도 벽체 시트 판넬	2,000,000	200,000	1,800,000	
		59B	웰컴월 타일 및 아트월 타일 연장 + 거실,주방,복도 벽체 시트 판넬		2,000,000	200,000	1,800,000	

■ 가구 선택품목

(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구성	공급대금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침실	반침장	40	침실1 반침장	1,200,000	120,000	1,080,000	
		59A	침실2 반침장	1,200,000	120,000	1,080,000	
		59B	침실2 반침장	1,200,000	120,000	1,080,000	

■ 가전 선택품목

(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구성	공급대금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인덕션 쿡탑3구	공통	인덕션 3구	1,100,000	110,000	990,000	LG전자 / BEI3ASB4BI
	전기오븐	공통	전기오븐 + 하부 후라이팬 서랍	550,000	55,000	495,000	LG전자 / MZ385EBT1
	주방TV	공통	10인치	500,000	50,000	450,000	현대에이치티㈜ / HKT-412
	식기세척기	59A,B	14인용 (가구도어 부착형)	1,500,000	150,000	1,350,000	LG전자 / DIE5PT
	빌트인 냉장고	40	오브제 4도어 냉장고	3,500,000	350,000	3,150,000	LG전자 / 오브제 컬렉션 4도어 상냉장 (BC4S1AA1)
		59A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5,500,000	550,000	4,950,000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1도어 냉장(BC1L2AA) / 냉동(BC1F2AA) / 김치(BC1K3AA)
		59B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5,500,000	550,000	4,950,000	

■ 조명 선택품목

(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구성	공급대금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거실/복도	조명특화	4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아트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	1,100,000	110,000	990,000	
		59A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아트월 및 웰컴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	1,500,000	150,000	1,350,000	
		59B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아트월 및 웰컴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	1,500,000	150,000	1,350,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선택품목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설치위치	공급대금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40	욕실1(공용욕실)	600,000	60,000	540,000	VOVO / TCB 7000
59A, 58B	욕실2(부부욕실)	600,000	60,000	540,000	VOVO / TCB 7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타일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위치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선택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A,59B타입 침실1,2 통합형 구조 선택시 도어 및 조명, 배선기구, 스위치 위치는 변경 되지 않습니다.

(2) 마감재/가구/가전/조명 선택품목 유의사항

- 유상옵션 품목 및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각 평형별 유,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및 기타 가전기기는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빌트인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며, 컬러의 색상 및 설치 순서는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중문의 제조사, 모양,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신발장 측면 가구 판넬 길이가 달라집니다.
- 침실 반침장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반침장 가구의 상하부, 측 후면 등 비 노출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 선택시 해당부위는 수납장으로 마감됩니다.
- 전기오븐 유상옵션 선택시 전기오븐 및 하부 프라이팬 서랍이 설치 되며, 미 선택시 해당부위는 수납장으로 마감됩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가구의 하드웨어류가 변경 되며 본 공사 시 제품의 제조사 및 모양, 규격, 색상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콘센트는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며,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제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59A 타입 주방특화2(ㄱ자)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상판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 됩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 미 선택시 주방 벽은 도기질 타일,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시공 됩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 미 선택시 상부장 하부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후드장 및 침니형 후드가 설치 됩니다.
- 59A 타입 주방특화 유상옵션은 1(ㄷ자),2(ㄱ자) 2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중복선택이 불가합니다.

- 59A 타입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특화 유상옵션1(ㄷ자) 또는 2(ㄱ자) 선택에 따라 마감재 시공 부위는 달라집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냉장고장 오픈 부위는 마감특화 적용 부위에 해당 되지 않으며, 유상옵션 선택 유무와 상관없이 벽지로 시공 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타일 및 시트판넬 나누기는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디톤바닥 유상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에디톤 스톤의 제조사 및 색상,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의 간접 등박스 및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 등의 규격 및 깊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선택 옵션(유상 옵션) 금액 납부계좌

금융 기관	계좌 구분	계좌 번호	예 금 주
국민은행	선택옵션 대금 납부계좌	671001-04-068560	한신공영(주)

11

유의 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LIGHT(지하 채광을 위하여 지상으로 낸 천창), 이동통신설비[옥외안테나 옥상층(101동,103동,105동,107동)/중계장치 옥상층(101동,103동,105동,107동)/중계장치 지하1층 101동(동통신실), 105동(동통신실), TV수신공청안테나[옥탑층(103동)], 외부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조명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벌,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

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상기 기부채납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면적이 추가되어 공부상 면적, 기부채납면적이 추가매입 변경될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본 단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입니다.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공부상 구역면적	실사용 대지면적	기반시설(기부채납)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면적(㎡)	26,984.10㎡	23,055.20㎡	3,928.90㎡	18.73%	249.96%

■ 정비구역 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당해 정비구역 내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정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은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단지내 조합분양, 일반분양 및 임대(108동) 29세대가 혼합 배치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사업은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혹은 관련 인허가청 협의 결과에 따라 구역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시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 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 및 차선, 교통시설물 현황 등은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와 무관합니다.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북측은 43M도로와 인접, 남측은 12M도로 및 향나무어린이공원과 인접, 동측은 12M도로와 인접, 서측은 6M도로, 14M도로와 인천송도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등과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옹벽 및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벽체의 형태, 마감, 구간,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계획은 인접 단지와의 협의 및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옹벽의 종류, 디자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체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주변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 하여야 합니다.

■ 학교, 학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초·중·고등학생은 해당 학교군 내 적정 배치가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인천송도 초등학교이나, 향후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변경 등에 의해 학생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사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고등학교의 경우 연수구(송도 제외)지역 내 추가 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여유교실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학생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의를 관할 인허가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지자체와 해당구역 무상임대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무상임대 협약 체결전까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할 경우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12~29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 지붕층에 태양광설비(108동 제외한 전동)가 설치되며, 옥탑부 장식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시 당 사업장 부지의 확정 경계 및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 및 타워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모형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예정위치는 설치심의 신청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배치도/시설물설치계획도 등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미술장식품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차량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일체형 유리난간 설치로 세대로의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하며, 승강기 사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상 1층은 일부 필로티 구조로 필로티의 층고는 전체 동 2.95M입니다.
- 필로티의 천장고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7동, 108동 2.36M(일부공간 2.2M), 105동, 106동은 2.36M로 필로티 천장고 및 통행관련은 주동 위치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의 천장고는 실시설계시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는 구조상 외기에 직접면하는 구조로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품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TOP-LIGHT, 외부계단실, 놀이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협의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류대로변 주변에는 소음기준 만족을 위해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지분은 시설별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재활용분리수거함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동 지하 피트 내부에는 배수를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PIT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이 각동 1개소씩 지하1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1,2층, 최상층의 외부창호주변 실내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각동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전력생산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면 및 모형(CG)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계단실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3개 층마다 1개소, 최상층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전실 창호는 전층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스윙도어 및 픽스도어이며, 강화유리(안전유리)가 적용됩니다.
- 각 동 지붕층에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경관조명 작동 및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일부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설비(108동 제외한 전동), 이동통신 옥외 안테나 및 중계장치 : 옥상층 (101동, 103동, 105동, 107동), 중계장치 : 지하1층 동통신실(101동, 105동), TV공청수신 안테나(103동 옥탑),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 및 전자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LIGHT,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창고,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청약 및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상시 막혀있는 구조로 이동을 통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지 관련 비상차로는 비상시에 도로 점용이 필요할 수 있고 도로 점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단지 남측 아파트 주차장, 서측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는 단지 남동측 지하1층 데크면으로 주차장 출입구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101동 동측으로 1개소, 106동 남동측으로 출입구 1개소) 2개소, 서측 외부계단 1개소, 남측 공원 맞은편 외부계단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직진입하는 구조로 주차출입구 유효높이는 2.7M이상이며, 차로폭은 6~7M이상(일부 장애인통행로 포함), 유효총고는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 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의 차량 램프 진입로를 바라보는 106동, 107동 일부 세대는 차량 진출입시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CG등에는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부서공간)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실시공시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일체형 유리난간 설치로 세대로의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하며, 승강기 사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재활용품보관소, 재활용품창고,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TOP-LIGHT,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어린이집), 북클럽(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맘스스테이션, 실내골프센터, 피트니스센터(GX포함), 어린이놀이터1,2, 주민운동시설, 야외 휴게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103동, 104동, 105동, 107동, 108동 정면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경비실, DRY ARE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101동, 108동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배면부에 별도의 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심의 신청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배치도/시설물설치계획도 등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외관, 조명

- 본 단지의 BI, CI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 또는 최상층 위 파라펫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의 세부디자인은 실시설계 완료시 확정되며, 상세 변경 반영되어 시공될 예정 입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피난/실외기공간은 외부에 설치되어 실외기 및 냉매 배관 등이 외부로 노출되므로 아파트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3개층 이하 전체 석재(103동 1호, 4호라인 일부는 제외), 4개층부터 수성페인트 마감이 기본 마감으로 시공 됩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시공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며,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공간으로 108동 배면부 인접 계획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분/구획되어 있으나, 출입구 및 차로, 통로 등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레벨 차이로 인해 경사가 일부 발생하며 계약 전 관련 도면, 모형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전용 재활용품보관소는 108동 1호라인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시각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대지에 물건의 적치, 시설물 적치, 영업등을 위한 대지의 사용 및 점용은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남측 주출입구에 문주 및 경비실이 설치되며, 단지 남동측 부출입구에 경비실이 추가 설치됩니다.
- 단지 북측 공공보행통로 출입구에 문주가 설치됩니다.
- 106동 남측에 설치되는 드랍존 및 맘스스테이션은 차량 출입구에 인접하여 소음 및 매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에 키즈클럽(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이 설치됩니다.
- 107동 남측에 대지경계선과 인접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됩니다.
- 107동 배면부에 대지경계선과 인접하여 북클럽(작은도서관)이 설치됩니다.
- 103동 하부에 대지경계선과 인접하여 관리사무소가 설치됩니다.
- 104동 하부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가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내부 집기, 비품, 기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시니어클럽(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키즈클럽(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니어클럽(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키즈클럽(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실은 107동 남측 1개소, 104동 남측 1개소, 103동 동남측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 높이는 지하1층 2.7M이상, 지하2층 2.3M이상, 주차장 차로폭은 구간별로 6.0~7.0M 예정 입니다.
- 주차대수는 총 829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819대(지하1~지하2층, 세대당1.25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 10대(지상1층)로 별도 구획/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0대 [공동주택 : 급속2대, 완속 8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마다 2개층씩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1층의 유효높이는 2.7m, 지하2층 유효높이 2.3m로 계획되어있으며, 택배차량 진입시 지하1층에 있는 무인택배함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1층 주차장에는 무인택배함이 각 동별 1개소씩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해 분해되는 결속재료가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고사하지 않은 경우는 결속재료 미제거로 인한 시공하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 합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부 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부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일부 단 차이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육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는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지의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창호 사양은 “발코니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내측 창호 하부에 골조턱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출입이 불가한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내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설치되는 마감자재는 외산 OEM제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타입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자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 보일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의 경우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결로현상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 설치되어 내부 설치수가 다소 줄어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A, 59B 타입의 다용도실은 세탁기/건조기 직렬 설치시 발코니 창호와 간섭이 되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A, 59B타입의 피난/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는 유공판은 추후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드레스룸은 생활여건에 따라 결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안목/치수

-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층고 : 2.8m, 천장고 : 2.3m), 최상층(층고 : 2.9m, 천장고 : 2.3m)입니다.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재/타일

- 타일 및 석재류(인조석 포함)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워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주방 상판, 벽 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0타입의 안방 분함문 커텐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텐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불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장보다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개별 가전기기 설치시 가전기기의 크기에 따라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9B타입의 확장시 별도로 안방 드레스룸이 제공되지 않으며, 화장대 및 불박이 가구가 설치 됩니다.

■ 발코니/피난 및 실외기공간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9A, 59B 타입에 설치되는 피난/실외기 공간 에는 화재 시 인접 세대로의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된 구조로 비난방 공간이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님.
- 40타입 발코니에 비상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의 경계벽이 설치되어 인접세대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 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 중 발코니(주방)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T23) 및 브라켓이 설치 예정으로 견본주택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합니다.
- 59A, 59B 타입 피난/실외기공간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로 관련 법에 의하여 일부 바닥면적에 제외됩니다.
- 59A, 59B 타입 피난/실외기공간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시설은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시설은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 59A, 59B 타입 피난/실외기공간에 설치되는 난간대(유공판)은 풍압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0타입의 경우, 발코니 내 욕실 배기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와 같은 시공상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내부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발코니 및 세탁기실에 설치되며 필터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됩니다.
-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은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차단기까지 시공되며, 차단기 이후 가스콕밥으로 인입되는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배관을 분기하고 공배관에 배관을 삽입 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동별 외부 가스 입상배관은 3층까지 방법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이 보일러와 근접하여 설치되는 세대의 경우, 보일러의 점검·수리 등 A/S를 시행함에 있어 세탁기의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자가 직접 세탁기를 이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은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됩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치수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나누기 및 점검구 위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문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본공사시 단지 계획고에 의한 고저차 등 대지 주변현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재활용품보관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외부 계단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사업장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 면적 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당해 택지지구 또는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또는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세대 층간 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동별 유의사항

- 각 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에는 인근 아파트, 초등학교 등이 인접하여 위치해 있고, 각 동별 불빛, 소음, 분진,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사전에 견본주택,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동 옥상 파라펫 및 옥탑구조물에는 상향 투광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실시공시 결정됩니다.
- 주동일부 지상층에는 지하 제연철편 급기를 위한 제연급기구가 돌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별 필로티 및 외부에 분산 설치됩니다.
- 재활용품보관소는 101동 정면부 1개소, 102동 정면부 1개소, 103동 정면부 1개소, 104동 배면부 1개소, 105동 정면부 1개소, 106동 정면부 1개소, 107동 정면부 1개소, 108동과 근린생활시설 사이 2개소로 총 9개소이며 각동 인접하여 분산 배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재활용품보관소는 108동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별도의 전용 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유념하여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주동 지붕(108동 제외)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설비의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결정되고, 설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측벽에 접하여 문주가 계획됩니다.
- 101동 배면에 DA가 계획됩니다.

- 101동 배면에 선근이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6동 동측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인접한 소음, 분진, 불빛,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2가 계획됩니다.
- 102동 북측에 인접하여 문주, DA가 계획됩니다.
- 102동, 105동 서측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인접한 소음, 분진, 불빛,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북서측에 인접하여 DA가 계획됩니다.
- 103동 남동측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3동 1호, 4호라인 측벽 저층 일부는 석재 마감이 아닌 도장 마감으로 계획됩니다.
- 104동 지하1층에 차량통행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이 인접하여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 등 생활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104동 남측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인접하여 계획됩니다.
- 104동 북서측에 어린이 놀이터-2, TOP-LIGHT가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5동 1층에 키즈클럽(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키즈클럽(어린이집) 지붕은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105동 2층 3호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서측에 유아놀이터, 석가산이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6동 북측에 DA, 석가산이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6동 동측에 TOP-LIGHT가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6동 남측에 맘스스테이션, DROP ZONE, 차량통행로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불빛,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6동 북측에 인접하여 DA가 계획됩니다.
- 106동 동측에 TOP-LIGHT가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7동 동측에 차량통행로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불빛,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7동 남측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인접하여 계획됩니다.
- 107동 지하1층에 다함께돌봄센터, 북클럽(작은도서관)이 인접하여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 등 생활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107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1가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8동 북측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10대)가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분진, 불빛,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 남측에 TOP-LIGHT가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8동 북측에 DA가 인접하게 계획됩니다.
- 108동 서측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101동, 108동 사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함.
-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층고 : 2.8m, 천장고 : 2.3m), 최상층(층고 : 2.9m, 천장고 : 2.3m)입니다.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59A타입 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상의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 및 이미지는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난/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난간대(유공판)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 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PL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주방, 일반)의 내부 마감재,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가구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AL도어(유상옵션)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견본세대에 설치 표시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인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 및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저층부 석재범위, 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아파트 계단창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 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분양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도장 색상, 난간대, 캐노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공원, 산책로, 학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도로계획 및 시설 등은 개발 예정인 사항을 포함한 사항들은 완공 예정년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당 사업지의 입주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 대지경계선 외의 구간은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니며, 대지경계선 범위를 벗어난 구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홍보물간 일부 디자인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바라며, 계약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형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북클럽(작은도서관), 키즈클럽(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 선풍통, 위생기구류, 약세사리류,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배선기구,월패드,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송도영남아파트 제2건축계약사업 2. 신 청 자 : 송도영남아파트 제2건축계약사업조합 3. 대 지 좌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6-1번지 일대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 생활환경용 차단성능</td><td>★★★★</td></tr> <tr><td>2. 생활환경용 차단성능</td><td>★★</td></tr> <tr><td>3. 에너지 절감효과 지능성능</td><td>★★★★</td></tr> <tr><td>4. 친환경(에너지, 물)에 대한 실내 환경 조성도</td><td>★</td></tr> <tr><td>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body> </table> 나. 구조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6. 내구성</td><td>★</td></tr> <tr><td>7. 가파성</td><td>★★</td></tr> <tr><td>8. 수직하중 전달 효율성</td><td>★</td></tr> <tr><td>9. 수직하중 전달 효율성</td><td>★</td></tr> </tbody> </table> 다. 환경 관련 등급(최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0.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1. 물 사용량 절감성능</td><td>★★</td></tr> <tr><td>12. 인공열 발생량 최소화</td><td>-</td></tr> <tr><td>13. 자연채광 확보율</td><td>★</td></tr> <tr><td>14.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16.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17.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18.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19.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0.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1.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2.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3.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4.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6.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r><td>27.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td><td>★★★★</td></tr> </tbody> </table> 라. 생활 환경 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 단기내외 보행자 친화도 조성 및 인증</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어린이유치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td><td>★★</td></tr> <tr><td>4.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5.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6.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7.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8.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9.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0.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1.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2.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3.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4.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5.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6.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7.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8.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19.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0.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1.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2.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3.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4.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5.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6.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r><td>27. 생활환경 개선 사항</td><td>★★★★</td></tr> </tbody> </table> 마. 화재 - 소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 화재 및 화재예방</td><td>★</td></tr> <tr><td>2. 화재예방</td><td>★★</td></tr> <tr><td>3. 화재예방</td><td>★</td></tr> <tr><td>4. 화재예방</td><td>★★</td></tr> <tr><td>5. 화재예방</td><td>★★★★</td></tr> <tr><td>6. 화재예방</td><td>★</td></tr> </tbody> </tabl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한국부동산원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환경용 차단성능	★★★★	2. 생활환경용 차단성능	★★	3. 에너지 절감효과 지능성능	★★★★	4. 친환경(에너지, 물)에 대한 실내 환경 조성도	★	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6. 내구성	★	7. 가파성	★★	8. 수직하중 전달 효율성	★	9. 수직하중 전달 효율성	★	성능항목	성능등급	10.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1. 물 사용량 절감성능	★★	12. 인공열 발생량 최소화	-	13. 자연채광 확보율	★	1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6.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7.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8.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9.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0.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1.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2.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3.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4.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6.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7.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기내외 보행자 친화도 조성 및 인증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어린이유치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	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5. 생활환경 개선 사항	★★★★	6. 생활환경 개선 사항	★★★★	7. 생활환경 개선 사항	★★★★	8. 생활환경 개선 사항	★★★★	9.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0.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1.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2.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3.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5.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6.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7.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8.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9.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0.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1.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2.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3.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5.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6.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7. 생활환경 개선 사항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화재예방	★	2. 화재예방	★★	3. 화재예방	★	4. 화재예방	★★	5. 화재예방	★★★★	6. 화재예방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 건축물명 : 송도영남아파트 제2건축계약사업 2. 건축주 : 송도영남아파트 제2건축계약사업조합 3. 준공(예정)일 : 2025. 03. 3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6-1번지 일대 면 적 : 24,489㎡ (37,227평), 지면적 : 88,931 (133,847㎡)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알앤이엔지니어링사무소 2. 인증 개요 인증번호 : B-SEED-P-2025-0106-8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5. 03. 31.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일 3.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령 제 2023-52호 환경부령 제 2023-172호 인증기준 개정(2023. 07. 01.)) 4. 인증 내용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5. 인증 결과 (인증 항목별)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증 항목</th> <th>인증 결과</th> </tr> </thead> <tbody> <tr><td>에너지 효율</td><td>88%</td></tr> <tr><td>환경친화적 건축</td><td>88%</td></tr> <tr><td>주요 환경</td><td>77%</td></tr> <tr><td>환경친화적 건축</td><td>64%</td></tr> <tr><td>환경친화적 건축</td><td>52%</td></tr> <tr><td>환경친화적 건축</td><td>47%</td></tr> <tr><td>환경친화적 건축</td><td>60%</td></tr> </tbody> </table> 종합등급 ★★★★★ 2025년 02월 13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인증 변경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항목	인증 결과	에너지 효율	88%	환경친화적 건축	88%	주요 환경	77%	환경친화적 건축	64%	환경친화적 건축	52%	환경친화적 건축	47%	환경친화적 건축	60%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환경용 차단성능	★★★★																																																																																																																																																			
2. 생활환경용 차단성능	★★																																																																																																																																																			
3. 에너지 절감효과 지능성능	★★★★																																																																																																																																																			
4. 친환경(에너지, 물)에 대한 실내 환경 조성도	★																																																																																																																																																			
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6. 내구성	★																																																																																																																																																			
7. 가파성	★★																																																																																																																																																			
8. 수직하중 전달 효율성	★																																																																																																																																																			
9. 수직하중 전달 효율성	★																																																																																																																																																			
성능항목	성능등급																																																																																																																																																			
10.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1. 물 사용량 절감성능	★★																																																																																																																																																			
12. 인공열 발생량 최소화	-																																																																																																																																																			
13. 자연채광 확보율	★																																																																																																																																																			
1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6.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7.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8.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19.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0.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1.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2.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3.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4.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5.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6.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27.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기내외 보행자 친화도 조성 및 인증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어린이유치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																																																																																																																																																			
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5. 생활환경 개선 사항	★★★★																																																																																																																																																			
6. 생활환경 개선 사항	★★★★																																																																																																																																																			
7. 생활환경 개선 사항	★★★★																																																																																																																																																			
8. 생활환경 개선 사항	★★★★																																																																																																																																																			
9.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0.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1.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2.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3.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5.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6.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7.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8. 생활환경 개선 사항	★★★★																																																																																																																																																			
19.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0.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1.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2.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3.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4.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5.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6. 생활환경 개선 사항	★★★★																																																																																																																																																			
27. 생활환경 개선 사항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화재예방	★																																																																																																																																																			
2. 화재예방	★★																																																																																																																																																			
3. 화재예방	★																																																																																																																																																			
4. 화재예방	★★																																																																																																																																																			
5. 화재예방	★★★★																																																																																																																																																			
6. 화재예방	★																																																																																																																																																			
인증 항목	인증 결과																																																																																																																																																			
에너지 효율	88%																																																																																																																																																			
환경친화적 건축	88%																																																																																																																																																			
주요 환경	77%																																																																																																																																																			
환경친화적 건축	64%																																																																																																																																																			
환경친화적 건축	52%																																																																																																																																																			
환경친화적 건축	47%																																																																																																																																																			
환경친화적 건축	60%																																																																																																																																																			

[illegible]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예정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세대제외)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회 사 명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	세종종합기술(주)
감리금액	2,950,344,100	599,555,000	660,000,000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니다.

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일금 칠백이십칠억오천삼백팔십칠만원정 (₩72,753,870,000)	01292025-101-0002300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출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56번길 8-14, 6층 601호(청학동, 청학프라자)	120171-0004741
시공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110111-0075683

■ 홈페이지 : <https://www.sd-thehue.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 (☎1644 - 5575)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